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7. 9 선고 2020가합1037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종합

담당변호사 안병진, 김지현, 김태범

피고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연

변론 종결2021. 6. 11.

판결 선고2021. 7.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소외 D 사이에 2019. 6. 7. 체결한 매매계약 및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9. 10. 7. 체결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C는 위 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2019. 10. 28. 접수 제99143호로, 피고 B은 소외 D에게 같은 등기와 2019. 6. 7. 접수 제51043호로 각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D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6. 8. 9.경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 2) 피고 B은 2019. 6. 7. D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E 대 182㎡, F 대 10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자이고, 피고 C는 2019. 10. 7.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재차 매수한 자이다.

나. 원고와 D의 재산분할협의

- 1) 원고와 D는 2016. 8. 9.경 협의이혼신고를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이하 '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산분할협의서

1. 원고는 D에게

- 가. '충청남도 아산시 G 답 1,821㎡' 토지 전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나. '충청남도 아산시 H 답 4,035㎡' 토지 전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다. '충청남도 아산시 I 2,584㎡' 토지에 대한 2번 원고 지분 전부(지분 2분의1 전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라. '충청남도 아산시 J 전 1,382㎡' 토지 전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마.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J 지상 건물을 의미함)에 대한 2번 원고 지분 전부(지분 2분의1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가. 원고는 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아산시 K아파트 L호를 의미함, 이하 'K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나. D는 위 부동산에 원고가 임차인 M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종료시 전세보증금반환채무(전세보증금

일억사천만원)에 대해 M와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계좌번호 N 예금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리인 O은행 천안청수지점에 지급한다.

2) 원고는 2016. 8. 26. D에게 위 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위 협의서에 기재된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와 D 사이 관련 재산분할 판결 확정 경위

1) 원고는 2017. 1. 12. D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7드단50195호로 주위적으로 이혼의 무효, 예비적으로 이혼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7. 1. 23. D 소유의 아산시 G 답 1,821m², H 답 4,035m², I 답 2,584m², K아파트에 관하여 이혼의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위 법원 2017즈단1007호)

2) 위 법원은 2017. 6. 22. 원고의 이혼무효확인청구와 이혼취소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전가정법원 2017르14805호로 항소하였다.

3)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혼취소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고, 앞서 본 재산분할협의는 D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하고 재산분할로서 D에게 1,146,882,828원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1. 2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기존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재산분할로써 D가 원고에게 아산시 G 답 1,821m² 및 K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55,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D가 대법원 2018므1616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4. 5. 상고 기각되었다(이하 제1심, 항소심 판결과 합하여 '관련 재산분할 판결'이라 한다).

라. D의 K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

D는 관련 재산분할 판결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8. 4. 14. K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2018. 5. 15. 주택도시공사의 대리인 O은행 천안청수지점에 140,000,000원을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이행을 완료하였다.

마. D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및 전매 행위

D는 2019. 6. 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2019. 10. 7.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의 D에 대한 재산분할금채권 일부 회수

1) 원고는 관련 재산분할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 소유의 아산시 H답 4,035m², I 답 2,584m²(이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P로 강제경매신청(이하 '관련 경매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다.

2) 2020. 8. 7. 열린 관련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Q조합이 1순위 배당채권자로서 원금 500,000,000원, 이자 41,253,738원 합계 541,253,738원을 배당받는데 이어 원고가 2순위로 539,471,724원을 배당받았다.

사.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경과

1) D는 2020. 11. 11. 이 법원 2020가단119789호로 자신이 관련 재산분할 판결에 기하여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는 109,562,915원 및 위 돈에 대한 지연이자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원고는 K 아파트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D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고도 관련 재산분할판결의 항소심 및 상고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아 재산분할판결이 확정되었고 사실상 원고의 재산을 이용하여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등으로 D가 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데다, 설령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D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3) 위 법원은 2021. 4. 27. D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이하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이라 한다)하였고 위 판결은 2021. 5. 26. 확정되었다.

4) 위 법원은 위 판결에서, 원고가 관련 재산분할 판결에 기하여 D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분할금채권에 대하여 D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140,000,000원(K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 금액)의 상계적상일까지의 원리금 146,290,410원을 상계충당하면 508,709,590원(755,000,000원 - 146,290,410원)이 잔존하고, 위와 같이 잔존한

재산분할금채권에서 원고가 2020. 8. 7. 관련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539,671,724원 중 40,525,049원을 2020. 8. 7.까지 발생한 재산분할금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배당금 499,146,675원을 원금에 충당하면,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최종 잔여 재산분할금 채권은 109,562,915원(= 608,709,590원 - 499,146,675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3호증의 2, 3,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의 D에 대한 관련 재산분할 판결에 기한 재산분할금채권 755,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6. 7. 이전에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성립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9. 6. 7. 당시 D의 적극재산은 1,198,039,000원 상당의 경매대상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1,261,025,469원(=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 원리금 761,205,479원[= 원금 755,000,000 + 6,205,479원(755,000,000원×60/365×0.05)] + Q조합에 대한 채무 500,000,000원)이 존재하였는 바,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D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9. 6. 7.경 D의 적극재산은 1,345,480,095원(= 경매대상 부동산 가액 1,198,039,000원 +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원리금 147,441,095원1)

(=

원금 140,000,000원 + 지연손해금 7,441,095원(=2018. 5. 16.부터 2019. 6. 7.까지 연 5% 비율로 계산))이 존재하고, 소극재산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1,261,025,469원이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D가 위 적극재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도 소유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6. 7. 당시 D의 적극재산으로 1,198,039,000원 상당의 경매대상 부동산이 존재한 점,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금채권 원리금 761,205,479원, Q조합에 대한 채무 500,000,000원 합계 1,261,205,479원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말미암아 D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D의 원고에 대한 K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9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에서 D의 원고에 대한 K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확정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가지는 증명력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14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경매대상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D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존재한 D의 적극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재산인 경매대상 부동산의 가액과 부당이득반환채권 원리금을 합한 액수인

1,345,480,095원만으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의 소극재산의 합계액 1,261,205,479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D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D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정원

판사양지혜

판사권종현

별지

1) D가 반환한 K아파트 임대차보증금 관련.